

# 서서울CC 주중회원 회칙

## 제1 장 총 칙

### 제1 조 (목적)

본 약관은 서서울 컨트리클럽(이하“클럽”이라 칭한다)의 주중회원 모집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 조 (적 용)

본 약관은 클럽의 주중회원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모두에 적용된다.

### 제3 조 (약관의 성립 및 효력)

본 약관은 클럽의 주중회원이 되고자 입회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입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성립되며, 본 약관의 효력도 발생한다.

## 제2 장 입 회(모집)

### 제4 조 (모집 인원)

모집 회원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의 1항에 의거투자비 범위 안에서 적정수를 모집한다.

### 제5 조 (모집 방법)

당 클럽이 입회를 승인하고 신청자가 입회금을 완납 할 시 주중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발급한다.

### 제6 조 (입회 신청)

당 클럽의 주중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당 클럽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회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### 제7 조 (입 회 보 증 금)

- 1) 주중회원은 입회 신청 시 입회금을 당 클럽에 완납하여야 한다.
- 2) 입회금은 주중회원의 입회보증금으로써 당 클럽에 3년간 거치하며 탈퇴 시 원금만 반환한다.

### 제8 조 (입회자격의 제한)

당 클럽은 다음의 경우 입회를 제한 할 수 있다.

- 1) 당 클럽이 정한 신청서 및 입회구비서류가 미비 되었거나 제출치 아니한 자.

### 제3 장 회원 운영 및 관리

#### 제9 조 (시설이용 및 회비)

- 1) 주중회원은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시설 이용 시 회사가 정한 소정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클럽 이용약관에 따른다.
- 2) 본 클럽의 주중회원이 회원 요금으로 예약 가능한 시설이용 횟수는 회원권 약정에 따르며, 횟수를 초과한 예약의 경우 별도 공지된 요금으로 적용한다.

#### 제10 조 (이용의 조건)

주중회원의 골프장 이용에 관한 예약, 각종요금, 락카 사용, 기타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건은 회사가 정하는 이용 약관을 따른다.

#### 제11 조 (이용의 권리)

- 1) 주중회원은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의 모든 개장일 중 평일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.
- 2) 주중회원은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내장객을 동반 할 수 있다.
- 3) 주중회원은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 할 수 있으며, 회사가 발행하는 각종 안내 문등을 배포 받을 수 있다.
- 4) 회원의 입회 기간은 3년이며 입회승인 받은 날 부터 적용 된다.
- 5) 본 모집약관 및 클럽의 제규정을 위반한 주중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
#### 제12 조 (회원의 의무)

- 1) 주중회원은 이 회칙과 회사가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 약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주중회원은 골프장을 이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 하여야한다.
- 3) 주중회원은 골프장을 이용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4) 주중회원은 입회 시 회사에 등록한 각종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(주소, 직장, 기타 회원 명부의 기재사항)
- 5) 주중회원은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 할 수 없다.
- 6) 주중회원은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,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
#### 제13 조 (회원자격의 상실)

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- 1) 제명
- 2) 사망
- 3) 탈회
- 4) 회원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될 때에는 그 결정일

#### 제14 조 (회원의 자격제한)

주중회원의 다음 각항의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명 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 할 수 있다.

- 1)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경우.

- 2) 본 약관 및 클럽의 제반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.
- 3) 주소변경 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회원신상 변경 등의 신고를 태만하였을 경우.
- 4) 당사 인터넷에 게재한 이용안내에 따른 예약 및 위약안내와 관련한 사항을 연간 2회 이상 위반 했을 경우.

#### **제15 조 (회원권의 양도, 양수)**

- 1) 회원권의 양도, 양수에 의하여 새로 회원이 된 자는 최초의 입회일을 기준으로 한다.(입회 기간만료 시 입회원금만 반환한다.)
- 2) 회원권의 양도, 명의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클럽에서 정한 금액을 개서료로 할 수 있다.

#### **제16조 (회원의 관리)**

- 1) 회원 명부에는 회원증번호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(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해당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) 주소, 직장, 전화번호를 기재한다.
- 2) 회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 골프 클럽은 회원 변동사항을 관할시장에 보고할 수 있다
- 3) 회원은 주소 기타 신상에 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본 클럽 홈페이지 또는 당 클럽 회원 관리부서에 즉시 수정 신고하여야 한다.

### **제4 장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**

#### **제17 조 (이 사 회)**

- 1) 본 클럽의 이사회라 함은 호반서서울 주식회사 이사회를 말하며 그 결의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.
- 2)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되어 상정되는 사항을 처리한다.

#### **제18 조 (운영 위원회)**

- 1) 본 클럽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- 2)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.

## 제5 장 객 원 (VISITOR)

### 제19 조 (객원의 정의)

객원(VISITOR)은 회원이 본인의 책임하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반한자를 칭한다.

### 제20 조 (요금의 납입)

객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골프장 이용요금 및 기타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.

## 제6 장 경 기 규 칙

### 제21 조 (경기 규칙)

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.

### 제22 조 (LOCAL RULE 및 임시규칙)

본 클럽의 LOCAL RULE의 규정, 개정,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 적용 할 규칙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.

### 제23 조 (관 습)

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.

### 부 칙

본 회칙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로써 행한다.

본 회칙의 해석에 있어 의문이 있을 시는 회사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.

본 회칙은 이사회 의결로 2020년(年) 01월(月) 01일(日)부로 개정 시행한다.